산업통상자원부 | 보도자료 | 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3. 30.(목) 06:00 < 3.30.(목) 석간 > 배포 2023. 3. 29.(수)

첨단·주력 10대 업종의 137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

- 업종별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, 향후 관계부처 적극 협의 예정
- 환경·입지·인증 등 핵심 분야 중심 발굴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규제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10대 업종*에 걸쳐 '과잉·불합리한 규제개선'을 추진한다.

* 첨단산업 (①반도체, ②배터리, ③전자.IT, ④바이오, ⑤로봇, ⑥청정에너지), 주력산업 (⑦자동차, ⑧조선.항공, ⑨석유화학, ⑩철강)

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업종을 관통하는 규제를 샅샅이 훑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종별 규제환경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, 그 첫 단계로 10대 업종, 총 13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.

새 정부 출범 이후, '22년 산업부는 337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관련 기업애로 등 총 280여 건의 규제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, 글로벌 수요부진,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대내외 투자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특히,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발표*한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, 투자특국(投資特國)을 만들기 위해 핵심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'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'을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자 한다.

*「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」,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

세부적으로 올해 규제개선은 상향식(Bottom-up)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(Top-down) 기반의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. 우선, 1단계로 10대 업종별로 기업과 협·단체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개선을 추진코자 하며, 2단계로 연구기관 및 협·단체와 함께 업종별 기업의 사업 전주기에 걸쳐 부과된 각종 부담을 심층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규제 환경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.

산업부는 현재 1단계 방안을 추진 중으로, 지난 1~2월에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, 향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.

<1단계 과제 발굴 현황>

구분		환경	입지물류	인증	안전	노동교육	무역	R&D	기타	계
공통		17	11	8	3	6	8	3	7	63
첨단	반도체	3			5	1				9
	배터리	1		1						2
	전자	3			2				1	6
	바이오			2	7					9
	로봇*								1	1
	청정에너지		7	3	7					17
주력	자동차		2	8	6			2		18
	조선항공	2				2			1	5
	석유화학	4								4
	철강	3								3
계		33	20	22	30	9	8	5	10	137

*「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('23.3.2)」에 따른 51개 로봇관련 과제는 不포함(별도 추진중)

대다수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환경·입지·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부합성,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다.

구분	주요 개선 방향
환경	글로벌 기준 이상의 과도 규제 합리적 조정, 화학물질 지정·관리체계 개선 등
입지	민간수요를 반영한 산단 입주제도 개선, 경자구역 규제 완화 등
인증	과도한 인증의 합리적 개선 및 인증 심사 주기 완화 등
노동·교육	경직적인 노동 규제 완화,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운영 자율성 제고 등
무역	수출실적 인정 기준 완화, 수출입 절차 관련 기업애로 해소 등

첨단산업 44건에 대해서는 미비된 안전·환경 기준 마련,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 선제적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.

구분	주요 개선 방향
반도체	반도체 첨단 장비 등 신규 설비 투자를 가로막는 안전·환경 규제 해소 등
바이오	혁신 서비스·제품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신산업 관련 규정 마련 등
로봇	배달·물류 등 新 비즈니스 수요를 반영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등
청정에너지	미비된 안전·인증 기준 마련, 입지·물류 등의 애로 해소 등

주력산업 30건에 대해서는 인력·환경 등 주요 이슈 해결, 디지털·그린 전환 저해 규제 해소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.

구분	주요 개선 방향
자동차	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·인증 관련 제도 개선, 자율주행차 상용화 규제개선 등
조선·항공	생산인력 확충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등
석유화학·철강	친환경 원료 활용 등 高탄소 산업의 친환경화 지원 등

<1단계 발굴 과제 주요 사례(상세내용 첨부)>

구분	주요 내용
공통과제 (63건)	①(환경) 美·日과 같이 화학물질 정보확보 및 평가 체계를 정부 주도로 전환 ②(환경)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영업허가제를 EU·美 등과 같은 신고제로 전환 ③(입지)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의 특수관계인 동반 입주 허용 ④(입지) 산단 입주업종의 정례적 재검토 근거 마련 ⑤(인증) 어린이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폐지
첨단산업 (44건)	⑥(반도체) 고압가스 방호벽 재질의 다양화 기준 마련 ⑦(바이오) 신기술 의약품에 대한 정의·분류체계 마련 ⑧(청정에너지) 암모니아,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열분해 기반 수소생산 설비 안전기준 마련
주력산업 (30건)	⑨(자동차) LPG 자동차 충전소와 수소충전소의 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완화 ⑩(조선) 조선분야 E-9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조선업 전용 E-9 제도 신설 ⑪(석유화학)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친환경 원료의 사용근거 마련

산업부는 1단계 발굴 과제 중 산업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, 타부처 소관 과제는 국조실 및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범부처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【붙 임】 1단계 발굴 과제 주요 사례
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김정예 (044-203-5540)
		담당자	사무관	임성관 (044-203-554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첨 부 1단계 발굴 과제 주요 사례

<공통과제>

① **(환경)** 화학물질 제조·수입업체는 등록을 위해 유해·위해성 자료를 확보해 全생애 유해·위해성 평가보고서 제출 필요

- 정부 주도로 등록이 진행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개별 기업이 자료 확보 및 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 부담*

* 외부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비용(1~30억원/물질)·시간(549시간/물질) 소요, 물질정보를 열람만 하더라도 지재권에 따른 비용지출 발생

< 국가별 화학물질 등록정보 확보 체계 >

미국	▸ 화학물질 제조·수입자는 **확보 가능한 자료만 제출**하고 이후 **정부 주도로 유해성 자료 확보** 및 **위해성 평가** 진행
일본	▸ 기존 화학물질은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 대상 물질 목록을 작성·평가하고 **필요한 경우에만 제조·수입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**

⇒ (개선방향) 美·日 등과 같이 정부 주도 화학물질 등록 체계로 전환하여 유해성 자료 확보 및 위해성 평가 필요

- (조치 필요사항)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 개정

② **(환경)** 유해화학물질 영업(제조, 사용, 판매업 등)을 위해서는 설치검사 등을 통과한 후에도 사전영업허가 취득 필요

⇒ (개선방향) 사전영업허가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포괄적으로 운영*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전영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필요

*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(1,200여종)에 대해 사전영업허가제, EU·미국은 신고제, 일본은 제조허가대상유해물질 9종에 대해서만 허가제 운영

- (조치 필요사항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개정

③ **(입지)**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국·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에 제공할 수 없어 자회사의 동반입주가 불가

⇒ (개선방향) 특수관계인이 외투기업인 경우 국·공유지에 대해 용지·시설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

- (조치 필요사항) 「경제자유구역법」 개정

④ **(입지)** 산단 입주기업은 산단 개발시 수립된 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리되어 신산업 출현 등에 따른 입주업종 수요 변화를 적시에 반영 불가

⇒ (개선방향) 산단 관리기관이 입주업종·입주자격 등을 정례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의무화 또는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
- (조치 필요사항) 「산업집적법」 개정

⑤ **(인증)**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제품 출시 전 시험검사를 거쳐 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며 5년 경과 시 재시험을 통해 유효기간 갱신 필요

⇒ (개선방향)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시험 비용·관리 부담을 완화하되, 사후관리 강화*로 안전 확보

*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규정 시행

- (조치 필요사항)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 개정

<첨단산업>

⑥ **(반도체)** 고압가스 방호벽의 재질은 철근콘크리트재 또는 강판재 방호벽만 인정하여 해당 재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재료로 방호벽 설치 불가

⇒ (개선방향) 기존 방호벽의 재질과 동등한 안전수준이면 다양한 재질의 방호벽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반도체 공장의 공간 활용 증대

- (조치 필요사항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상세기준 개정

⑦ **(바이오)**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개발 시 식약처 품목허가 규정에 명확한 정의·분류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허가 추진 등에 어려움 존재

⇒ (개선방향) 품목분류위원회를 신설('22.7월)하여 신기술 의약품 정의·분류체계 마련 중, 관련 규정 개정 예정

⑧ **(청정에너지)** 이미 상용화 되어 있는 수소생산 공정과 달리 원료의 열분해 반응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는 안전기준이 없어 현장 운용 곤란

* 도시가스, LPG, 탄화수소 등과 달리 천연가스, 암모니아,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 설비는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미포함 및 안전기준 부존재

⇒ (개선방향)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 설비도 법령상 수소추출 설비에 포함하고, 필요 안전기준 마련

- (조치 필요사항)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상세기준 마련

<주력산업>

⑨ **(자동차)** CNG 자동차 충전소와는 달리 LPG 자동차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, 충전설비 간 5m의 안전거리가 필요

⇒ (개선방향) CNG 충전소와의 형평성 및 충전설비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격거리 미적용

- (조치 필요사항) 「융복합 특례고시」 개정

⑩ **(조선)** 조선분야로 배정받은 E-9 외국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조선업 인력 부족 및 숙련화 저해

* E-9 외국인력은 최대 총 5회의 이직 가능

⇒ (개선방향) 조선분야 E-9 외국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조선업 전용 E-9 제도를 신설하여 조선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

- (조치 필요사항)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의결

⑪ **(석유화학)** 현행 규정상 석유정제업자(정유사)는 석유(원유 및 석유제품)만을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재활용 원료는 정유 공정 투입 불가

⇒ (개선방향)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공정 투입 허용을 통해 정유업계의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성 확보

- (조치 필요사항)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 개정